



제273회 정례회
2008. 7. 14

전문위원 검토보고

-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등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교육사회전문위원

-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-

검 토 보 고

□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8년 6월 30일

○ 회부일자 : 2008년 7월 7일

□ 제안 이유

- 충청북도학생회관과 통합하여 신설되는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시설 사용료를 정하고,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제명 "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" 를 "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"로 함.
- 나. 충청북도학생회관이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으로 확대·신설됨에 따라 공공 기관의 정의 중 충청북도학생회관을 충청북도 학생교육문화원으로 변경함.(안 제2조)
- 다.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의 명칭을 충청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로,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변경함.(안 제2조, 제43조)
- 라. 급변하는 학습사회에 부응하는 도서관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관외자료 대출 제한과 대출기간을 도서관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4조)

- 마.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신설에 따라 학생회관을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으로, 관장을 원장 및 관장으로 변경함.
- 바. 학생교육문화원 시설 사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원장이 정하도록 신설함.(안 제21조제2항제5호)
- 사. 도서관 사용료의 징수금액 중 칼라인쇄 사용료를 변경함.(안 별표 1)
 - (1) A3-B4의 사용료 란을 삭제
 - (2) A4-B5의 사용료를 1매당 180원에서 1매당 500원으로 상향 조정
- 아.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시설 사용료를 정함.(안 별표 2)

□ 검토 의견

○ 동 개정 조례안은

-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기구 신설을 담은 「충청북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」가 지난 2008년 6월 13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교육문화원의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금액을 규정한 것으로,
-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 조례안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.

※ **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7조¹⁾**(충북도학생교육문화원)

- 다만, 동개정 조례안의 「별표1」에서 규정한 도서관 사용료의 징수금액 중 인쇄료 구분란의 칼라인쇄(규격 A4-B5) 사용료를 1매당 현행 180원에서 500원으로 규정하여 360%의 인상률로 규정하고 있음.

1) 제17조(설치)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양증진, 소질개발, 정서 순화 등 감성교육에 기여하고, 다양한 체험학습과 미래 첨단산업인 바이오 교육을 통하여 창의적인 학생교육문화를 창달하고자 **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**(이하 “학생교육문화원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<개정 2008.6.13>

- 이에 따른 인상 사유와, 그간 사용료 징수금액 및 활용도, 타 시도와의 징수금액 비교 등 설명이 필요함.

<별표 1>

구 분		징수액		비고
칼라	A4-B5	현행	1매당 180원	현행대비 360% 인상
		개정	1매당 500원	

- 그리고, 안 제26조와 관련하여 「별표2」에서 규정한 충청북도 학생교육문화원의 학생문화원 공연장 사용료를 비롯한 부속 설비 사용의 징수금액에 따른 산출기초 및 타시도 징수 사례 등의 분석등을 토대로 적정한 금액산정의 여부 등 설명이 필요함.

※ 타시도 사용료 징수 현황(별첨)

-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²⁾」이 지난 2007년 4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실업계고교가 전문계고교로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, 교육청의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다수의 조례가 적용될 경우에는 사무관련 부서 및 법무담당 부서에서 일괄 정비로 인한 법규사무의 혼돈과 행정의 소모를 예방함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법규정비가 되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개별 조례의 개정시마다 개정함으로 행정의 불편을 초래하는 미흡함이 나타나고 있음.

※ 교육청 자치법규 : 조례 45건, 규칙 59건

붙임 :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등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.

2)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
부칙 <제20003호, 2007.4.12>

제3조 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영에 따른 "실업계고등학교"를 인용한 경우에는 "전문계고등학교"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.